

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 
제297회 제1차 정례회

# 대구광역시달서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

## 【집행부발의】

### 검토보고서



2023. 6.

경제도시위원회 전문위원

# 대구광역시달서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

## 검토보고서

2023. 6.

경기도시위원회

### 1. 검토과정

- 안건명: 대구광역시달서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
- 제출자: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(안전도시과장)
- 제출일자: 2023. 5. 26.
- 회부일자: 2023. 5. 26.
- 검토기간: 2023. 5. 26. ~ 5. 30.(5일간)

### 2. 제안이유

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.

### 3. 주요내용

-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 ~ 안 제2조)
- 위촉, 교육 및 임기, 대표단 구성, 활동에 관한 사항(안 제3조 ~ 안 제6조)
- 활동 지원, 관리 및 해촉, 표창에 관한 사항(안 제7조 ~ 안 제9조)

## 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: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6조의4
-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입법예고(2023. 4. 21. ~ 5. 11.): 의견없음
- 행정규제 심사결과: 해당사항 없음
- 부패영향평가 검토결과: 원안 동의
- 성별영향평가 검토결과: 원안 동의
- 비용추계서: 비대상
- 조례 · 규칙 심의결과: 원안 가결

## 5. 검토의견

- 본 제정조례안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에서 국민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주민 참여와 지원 조항이 신설 (2019.12.3.)됨에 따라 안전문화 활동을 실천하는 안전보안관 제도의 활성화 및 체계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임.
-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
  - 안 제1조,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,
  - 안 제3조에서 안 제6조까지는 안전보안관의 위촉, 교육 및 임기, 대표단의 구성,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,
  - 안 제7조에서는 안전보안관 활동에 대한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고,
  - 안 제8조, 안 제9조에서는 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과 우수 안전보안관의 표창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.
- 따라서 본 조례안은 안전보안관제도의 체계적 운영을 통한 안전문화 활동의 활성화로 구민들의 안전의식 함양과 지역의 안전수준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, 관련법령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< 이상 검토보고를 마침 >

## 대구광역시달서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“안전보안관”이란 안전문화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.

**제3조(안전보안관의 위촉)**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30명 이내에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안전보안관(이하 “안전보안관”이라 한다)으로 위촉한다.

1. 재난·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
2. 국가,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
3.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대구광역시 달서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가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, 학교, 기업의 직원
4. 재난·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
5.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문화 활동에 필요하다고 추천하는 사람

**제4조(교육 및 임기)** ① 구청장은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 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**제5조(대표단 구성)** 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 각 1명을 두며, 대표와 부대표는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정한다.

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
**제6조(안전보안관의 활동)**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.

1.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
2. 구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
3.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
4.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문화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**제7조(활동 지원 등)**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**제8조(관리 및 해촉)** ① 구청장은 안전보안관의 위촉과 해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
2.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
3. 그 밖에 질병, 심신장애 등의 이유로 안전보안관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

**제9조(표창)** 구청장은 안전문화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「대구광역시달서구 포상 조례」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.

#### 부 칙

**제1조(시행일)**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경과조치)** 이 조례의 시행 전 안전보안관 위촉, 대표단 구성 등 안전보안관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.

## 【관계법령】

### □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

제66조의4(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)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안전문화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.

1.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(응급상황시의 대처요령을 포함한다)
  2.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
  3. 안전행동요령 및 기준·절차 등에 관한 지침의 개발·보급
  4.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
  5. 안전 관련 통계 현황의 관리·활용 및 공개
  6. 안전에 관한 각종 조사 및 분석
  - 6의2.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관리 강화
  7. 그 밖에 안전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활동
-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문화활동의 추진에 관한 총괄·조정 업무를 관장한다.
-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내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.
-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안전문화를 실천하고 체험할 수 있는 안전체험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-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기관·단체에서 추진하는 안전문화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.